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년 3월 4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6조 중 비점오염원 관리 목적에서 '수생태계 보전'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수질 보전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함.

2. 주요골자

- 비점오염원 관리 목적에서 '수생태계 보전'을 삭제하려던 것을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.(안 제16조)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 중 ‘보전을’을 ‘및 수생태계 보전을’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”를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6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10%이내”를 “10퍼센트이내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 중 “풍수해저감종합계획”을 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3조”를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7호 중 “8m”를 “8미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”을 “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제목 “(풍수해대비)”를 “(자연재해대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풍수해대비”를 “자

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비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4조”를
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54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0조(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한 위험지구

4.·5. (생략)

제11조(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)

①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28호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

----- 10퍼센트

내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)

① -----

----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

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단, 지역내 저류시설에 한하여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.

- 1. ~ 36. (생략)
- 37.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(차도 또는 보도)의 신설 및 전폭보수 (다만, 고가도로, 지하도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)

- 38. ~ 44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- 제12조(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)
-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조-----

- 1. ~ 36. (현행과 같음)
- 37. -----

----- 8
미터 -----

- 38. ~ 44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제12조(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)
- ① -----

	<hr/> <hr/> <hr/> <hr/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